TAT 2급 이론+수행

이효진 교수님

개정세법 반영 자료

〈2021년 TAT 2급 개정세법 반영 자료- 해커스 금융 이효진 교수〉

▶ 다음은 2021년 교재 부분 중 2021년 개정세법이 반영된 부분만을 정리한 것이며, 추가적으로 시험문제에 출제되는 범위 내에서 개정세법을 정리한 내용입니다.

	2021 교재	개정 전	개정 후
1	p. 100	-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 · 법인사업자 · 직전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과세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	-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 · 법인사업자 · 직전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과세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이 **2억원** 이상인 개인사업자
2	p. 101	-영수증 발급대상 ② 간이과세자: 모든 공급	[추가됨] -영수증 발급대상 **② 간이과세자** **· 간이과세자 중 신규사업자 및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,800만원 미만인 사업자** **·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**
3	p. 108	-적용대상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대가(부가가치세 포함)의 합계액이 4,8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	-적용대상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대가(부가가치세 포함)의 합계액이 **8,000만원**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

4	p. 109		업종별 부가가치세율 *하단 표 참고 (#1)
5	p. 109	-세액공제 ① 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공제 ② 의제매입세액공제 ③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④ 전자신고세액공제	-세액공제 ① 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공제 ②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③ 전자신고세액공제
6		-예정부과와 납부 ② 예외 신고납부 · 휴업 또는 사업 부진 등으로 인하여 예정부과기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예정부과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예정부과기한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.	-예정부과와 납부 ② 예외 신고납부 · 휴업 또는 사업 부진 등으로 인하여 예정부과기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예정부과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예정부과기한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. **· 예정부과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예정부과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예정부과기한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**
7	p. 110		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비교 *하단 표 참고 (#2)
8	p. 135		산출세액 *하단 표 참고 (#3)

(#1) 업종별 부가가치세율 (p. 109)

구분	부가가치세율
소매업,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, 음식점업	**15%**
제조업, 농업/임업 및 어업, 소화물 전문 운송업	**20%**
숙박업	**25%**
건설업, 운수 및 창고업(소화물 전문 운송업 제외), 정보통신업	**30%**
금융 및 보험 관련서비스업, 전문/과학 및 기술서비스업, 사업시설관리/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,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, 부동산 임대업	**40%**
그 밖의 서비스업	**30%**

(#2)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비교 (p. 110)

구분	간이과세자	일반과세자
적용대상	**직전연도 공급대가가 8,0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**	간이과세자 이외의 과세사업자
과세기간	1월 1일 ~ 12월 31일	1기: 1월 1일 ~ 6월 30일 2기: 7월 1일 ~ 12월 31일
과세표준	공급대가(부가가치세 포함)	공급가액(부가가치세 제외)
납부세액구조	공급대가 × 부가가치세율 × 세율	공급가액 × 10% - 매입세액
세금계산서 발급	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	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
세금계산서 수취	**(공급대가 X 0.5%)을 납부세액에서 공제**	매입세액으로 공제
대손세액공제	적용받을 수 없음	적용가능
납부의무면제	**당해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4,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의무 면제**	없음
포기제도	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과세자가 될 수 있음	없음

(#3) 산출세액 (p. 135)

종합소득 과세표준	기본세율
1,200만원 이하	과세표준 X 6%
1,200만원 초과 4,600만원 이하	72만원 + (과세표준-1,200만원) X 15%
4,600만원 초과 8,800만원 이하	582만원 + (과세표준-4,600만원) X 24%
8,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	1,590만원 + (과세표준-8,800만원) X 35%
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	3,760만원 + (과세표준-1억5천만원) X 38%
3억원 초과 5억원 이하	9,460만원 + (과세표준-3억원) X 40%
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	1억7,460만원 + (과세표준-5억원) X 42%
10억원 초과	**3억8,460만원 + (과세표준-5억원) X 45%**